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포츠과학과 학과내규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통합 대학원 학칙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포츠과학과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스포츠과학 분야(스포츠 건강 분야와 스포츠산업 분야 등)를 발전시키고 전문 연구자 양성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 및 교육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교의 특성화 방향에 기초한 스포츠과학 분야의 실무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제 2장 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 ① 일반대학원 스포츠과학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둔다.
 1.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 이라 한다)
 2.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 이라 한다)
 3. 학·석사연계과정
-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정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교과목 이수)

- ① 전공과목은 학과별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 스포츠과학과 학위 이수를 위한 교과 학점은 본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석사과정 : 24학점 (전공필수 6학점 + 전공선택 18학점)
 2. 박사과정 : 36학점 (전공필수 6학점 + 전공선택 30학점)※ 단, 박사과정에 입학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동일전공 출신 학생의 경우 전공선택 36학점 이수한다.
3. 학·석사연계과정 : 24학점 (전공필수 6학점 + 전공선택 18학점)
 - 전공필수 : 스포츠연구방법론(1학기), 스포츠통계연구(2학기)
 - 전공선택 : 교과과정 참고※ 단, 본인 전공 계열이 아닌 타전공 계열의 교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열(스포츠경영, 여가학, 장애인신체활동건강, 스포츠사

회학) 전공자는 자연과학계열(운동생리학, 운동심혈관생리학, 운동수행분석, 스포츠킨디셔닝)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② 체육학사가 아닌 자는 선수과목(지원전공분야)를 최소 1과목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정선수과목'은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수과목 : 스포츠해부학,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산업경영론, 건강스포츠카운셀링, 운동역학, 여가학, 현대사회와 여가이슈, 스포츠정책론, 장애인체육의이해

제5조(본교 일반대학원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

-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일반대학원의 동일전공 출신 학생이 전공학점으로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였고 그 초과한 학점이 일반대학원의 동일전공 박사과정 교과목에 해당할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 승인을 얻어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학점수 제한)

- ① 매 학기 수강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7조(종합시험)

-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과정: 석사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
 - 2. 박사과정: 박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
 - 3.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종합시험 과목은 본인이 이수한 전공과목으로 하고, 전공필수를 포함한다.
 - 1. 석사과정 : 2과목(전공필수 1과목 + 전공선택 1과목)
 - 2. 박사과정 : 3과목(전공필수 1과목 + 전공선택 2과목)

※ 단, 본교 석사 졸업생의 경우 전공선택 3과목(본인전공 2과목 + 타전공 1과목)을 응시한다.

제8조(외국어시험)

- ① 외국어시험 대체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과정 :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신입생 신청 가능)
 - 2. 박사과정 :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신입생 신청 가능)

3.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외국어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및 한국어 시험방법은 본교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학원 영어 강좌 수강 또는 대체 성적(외부공인시험)으로 대체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영어를 공용어 또는 상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아이엘츠(IELTS),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지텔프(G-TELP), 한국어능력시험(TOPIK)

③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대학원영어 : B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2. 외부공인시험 :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표 참고)을 취득한 후 매년 3월과 9월의 정해진 신청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 외국어시험 대체 성적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다.

[외국어시험 외부공인시험 성적 기준표]

구 분		사회	인문	자연	공학	예술	체육	계약학과	
TOEFL	PBT	560	560	540	540	500	560	500	
	CBT	217	217	207	207	173	217	173	
	IBT	82	82	76	76	60	82	60	
TOEIC		760	760	700	700	580	760	580	
TEPS		329	329	301	301	247	329	247	
IELTS		6.5	6.5	6.0	6.0	5.0	6.5	5.0	
TOEIC SPEAKING		140	140	130	130	110	140	110	
G-TELP	level 1	50							
	level 2	70	70	65	65	50	70	50	
	level 3	93	93	85	85	65	93	65	
OPIC		IM3	IM3	IM2	IM2	IM1	IM3	IM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제 4장 대학원연구생

제9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학칙 제29조제1항의 등록은 학기단위로 한다.

- 등록요건: 수료생(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한 자)

② 수료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학교의 도서관·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3.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여 연구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기

③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5장 학위수여요건

제10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대학원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수료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승인을 받은 사람(승인이 불필요한 연구도 면제승인번호 필요)
6. 연구 종료 후 IRB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사람

②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수료 후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승인을 받은 사람(승인이 불필요한 연구도 면제승인번호 필요)
6. 연구 종료 후 IRB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사람

제12조(학위논문 지도교수)

①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은 입학 후 7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학위논문 심사위원)

- ①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 ②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심사위원 중 2명은 타 대학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학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14조(논문심사 절차)<개정 2024. 10. 07.><개정 2025.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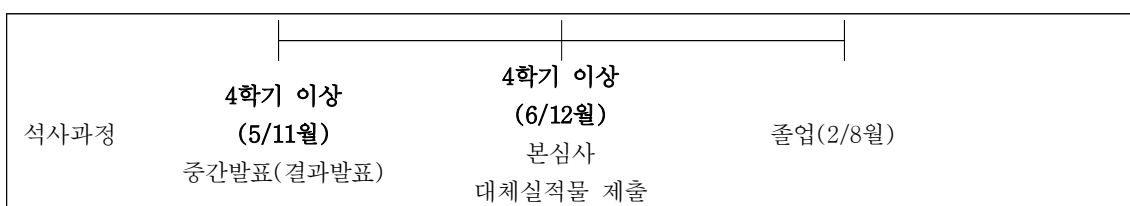
	3학기 이상 (5/11월) 계획발표	4학기 이상 (5/11월) 중간발표(결과발표)	4학기 이상 (6/12월) 본심사	4학기 이상 (7/1월) 학위논문제출 졸업(2/8월)
석사과정				
	4학기 이상 (수시) 계획발표	대학원연구생 (5/11월) 예비심사(결과발표)	대학원연구생 (6/12월) 본심사	대학원연구생 (7/1월) 학위논문제출
박사과정				

- ① 석사학위논문심사는 계획발표, 중간발표(결과발표)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 ② 박사학위논문심사는 계획발표, 예비심사(결과발표)와 1회 이상의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 ※ 단, 박사학위논문심사의 경우, 예비심사(결과발표) 신청일 전까지 학술지게재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사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대학행정(학술지게재실적물제출)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술지게재 요건: 박사과정 입학 후 KCI 등재지 이상에 2편 또는 SCI(E) 등재지 이상에 1편 이상 게재
 - ※ 단, 본인이 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에 한하며, 스포츠과학과 소속임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 ※ Scopus의 경우, 국문으로 작성 시 KCI급, 영문으로 작성 시 SCI(E)급으로 인정한다.
- ③ 심사 대상자는 논문심사(계획, 결과발표, 본심사 모두 해당) 일주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용 논문 가제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준비된 경우에 본심사를 진행한다.
 - 1. 석사과정, 박사과정 :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부
 - 표절을 : 10% 미만

제15조(대체실적형 석사학위 청구)<개정 2024. 10. 07.>

- ① 서울시립대학교 통합대학원 학칙 40조(학위청구자격과 학위논문)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68조에 따른다.
- ② 학위청구대체실적 중 학술형(학술지 논문 게재)을 인정한다.
 - 학술지게재 요건: KCI 등재지 이상
 - ※ 단, 단독 제1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에 한하며, 학위 청구인의 소속 표기 시 반드시 서울시립대학교를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 ③ 대체실적형 석사학위 청구(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대체실적형 석사학위수여요건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체실적형 석사학위 청구 절차)<개정 2025. 03. 04.><개정 2025. 05. 13.>



- ① 대체실적형 석사학위 청구 절차는 중간발표(결과발표)와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 ※ 단, 중간발표(결과발표)에서 발표한 논문주제로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여 본심사 마감일까지 게재된 논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023. 12. 01.)
 (2024. 04. 02.)
 (2024. 05. 29.)
 (2024. 10. 07.)
 (2025. 03. 04.)
 (2025. 05. 13.)